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84

발의연월일 : 2026. 1. 20.

발 의 자 : 김성원·배현진·안철수
김선교·정동만·박덕흠
김정재·고동진·박충권
김용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은 인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고위험·고난도 임무로서 긴급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구조·구급대원의 신속한 판단이 요구됨. 이러한 특성상 수색·구조·구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구조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음.

현행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형의 감면 규정을 두어 구조·구급대원이 공익적 목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반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동일하게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수색·구조 활동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 간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 역시 긴급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구조·구급대원의 법적 불안을 완화하고 구조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수색·구조·구난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색·구조·구난활동으로 인하여 구조대상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수색·구조·구난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급상황에 처한 구조대상자를 구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 자
2.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를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의 죄를 범한 때부터 적용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의2(수색·구조·구난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색·구조·구난활동으로 인하여 구조대상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수색·구조·구난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급상황에 처한 구조대상자를 구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 자 2.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를 한 자